

안양시 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2000. 9. 19.	조례 제1708호
일부개정	2005. 9. 26.	조례 제1958호
일부개정	2006. 2. 22.	조례 제1985호
일부개정	2008. 7. 7.	조례 제2105호
전부개정	2009. 1. 6.	조례 제2131호
일부개정	2012. 5. 16.	조례 제2395호
일부개정	2014. 1. 2.	조례 제2509호(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4. 3. 20.	조례 제2529호(제명개정)
일부개정	2017. 11. 16.	조례 제2891호(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2018. 3. 29.	조례 제2936호
일부개정	2019. 10. 28.	조례 제3122호(안양시 조례 중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일괄 정비 조례)
일부개정	2020. 7. 10.	조례 제3213호(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0. 10. 15.	조례 제3244호(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2020. 11. 13.	조례 제3259호(안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에 따른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일부개정	2021. 12. 30.	조례 제3379호(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22. 10. 20.	조례 제3434호(안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정비조례)
일부개정	2023. 12. 29.	조례 제3599호
일부개정	2024. 7. 24.	조례 제3663호(안양시 국내외 교류협력 및 공공외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민간단체의 국제협력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필요한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전문개정 2018. 3. 29.]

제1조의2(기금의 설치)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제협력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안양시 국제협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본조신설 2018. 3. 29.]

제2조(기금의 재원 및 존속기한) ① 기금은 20억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4. 3. 20., 2018. 3. 29.>

1.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4. 3. 20., 개정 2018. 3. 29., 2023. 12. 29.>

[제목개정 2018. 3. 29.]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민간단체 국제 협력 진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개정 2012. 5. 16., 2014. 3. 20., 2018. 3. 29., 2023. 12. 29., 2024. 7. 24.>

1. 국제 친선결연도시 등 외국의 도시 또는 기관·단체와의 교육·문화·예술·경제·체육·청소년 등 민간부문 국제 협력 사업 및 활동
2. 시민의 국제화 의식 함양을 위한 세미나·토론회 등 각종 행사 또는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
3. 외국의 도시 또는 기관·단체에 대한 시 홍보 활동
4. 관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에 대한 문화교류사업 등 우호 증진 사업
5. 「안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각종 행사 중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행사
6. 기금의 운용, 관리를 위한 경비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간 국제 협력 사업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으로 관리한다. <개정 2014. 3. 20., 2018. 3. 29.>

② 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3조에 따라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15.>

③ 제3조 각 호에서 규정한 사업 및 활동은 기금의 이자 수익금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 국제협력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국제협력 관련단체·교육·문화·예술·체육·여성·경제계 등에서 국제협력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안전행정국장, 복지문화국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4. 1. 2.>

⑤ 위원 위촉 시 성(性)비율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 1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4. 3. 20., 개정 2017. 11. 16.>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금 관련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4. 3. 20., 2018. 3. 29.>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하여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본조신설 2014. 3. 20.]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4. 3. 2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9. 10. 28.>

② 공무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 3. 20.>

③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0., 2023. 12. 29.>

[제목개정 2023. 12. 29.]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 3. 29.>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의 조성·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

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사업 계획 수립 및 기금 결산을 위하여 반기별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안양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3. 29.]

제11조(회계관계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8. 3. 29.>

1. 기금운용관: 기금 관련 업무담당국장
2. 분임운용관: 기금 관련 업무담당과장
3. 출납원: 기금 관련 업무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9.>

제11조의2(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에 따라 안양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3. 29.]

제12조(실비변상)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9., 2020. 7. 10.>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안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1. 13., 2022. 10. 20.>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3. 29.]

부칙 <2009. 1. 6. 조례 제2131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5. 16. 조례 제23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 2. 조례 제2509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안양시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⑥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 <2014. 3. 20. 조례 제25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1. 16. 조례 제2891호,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안양시 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안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를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한다.

④ 부터 ⑬ 까지 생략

부칙 <2018. 3. 29. 조례 제29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0. 28. 조례 제3122호, 안양시 조례 중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20. 7. 10. 조례 제3213호,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안양시 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⑯ 부터 ⑧6 까지 생략

부칙 <2020. 10. 15. 조례 제3244호,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양시 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안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를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3조에 따라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② 부터 ⑭ 까지 생략

부칙 <2020. 11. 13. 조례 제3259호, 안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에 따른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30. 조례 제3379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0. 20. 조례 제3434호, 안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29. 조례 제3599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7. 24. 조례 제3663호, 안양시 국내외 교류협력 및 공공외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양시 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자매도시”를 “친선결연도시”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